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08. 04 (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09.22(월)
- 다. 상정일자 : 2008. 09.22(월)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재무과장 신종해)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 회의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시킴.

2)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 완화(안 제28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3) 대부료 감액율 1000분의 70으로 일괄 적용(안 제34조)

대부료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 하였음.

4)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허용(안 제40조)

수의계약 매각을 1989. 1.24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완화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진영)

가.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업무중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2008.4.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에 대한 인정기준을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된 것을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밖의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 사용·대부료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허가 건물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대부료감액율이 기존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대부목적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왔던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 하고,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기준을 "1981.04.30이전의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 건물토지"에서 "1989.01.24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함으로써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통일을 기하고,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도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려는 사항으로,

다. 결과적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주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이를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타 관립법령 적용이나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특별

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